Department of Education
Carmen Fariña, Chancellor

공고
2015 년 4 월 3 일

교육감 규정 C-30 은 학교장 및 교감 선발, 배정 및 임명을 규정합니다.

I. 현재 검토중인 수정조항의 주제 및 목적 설명

교육감 규정 C-30 은 학교장 및 교감 선발, 배정 및 임명을 규정합니다. 본 규정에 다음과 같은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:

- 본 규정은 2015년 6월 30일 이후 실시되는 감독직 선발 절차부터 효력을 발휘한다. 섹션 I
- 감독 지원 서비스 담당실(Office of Supervisory Support Services)에서 학교장 및 교감의 이전 교육경력 요건에 관한 지침을 공표한다. 섹션 VII(D)(3)
- 보로 현장 사무실에서는 해당 사무실에서 지원하는 학교 및 프로그램에 관한 레벨I 위원회 구성에 관한 기록을 유지한다. 섹션 XI(B)(1)
- 커뮤니티 학군 내 채용을 위한 레벨 I 위원회에 참여하는 감독직 위원은 공석이 발생한 학교 또는 학군 내 다른 학교의 슈퍼바이저이어야 하나, 이 두 가지가 모두 불가능할 경우 해당 보로 내 학교의 슈퍼바이저로 대체할 수 있다. 섹션 XI(C)(1)
- 비커뮤니티 학군 내 채용을 위한 레벨 I 위원회에 참여하는 감독직 위원은 공석이 발생한 학교의 슈퍼바이저 또는 해당 보로 내 다른 학교의 슈퍼바이저가 할 수 있다. 섹션 XI(E)(1)
- 레벨 I 위원회에서는 학군장 지명인이 클러스터 지명인을 대체할 수 있다. 섹션 XI(C)(1), XI (E)(1), XI(G)(3)(b)
- 기밀유지 조항을 위반하는 C-30 위원회 구성원은 선발절차에서 제외되며, 차후 C-30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것이 금지된다. 섹션 XVII(B)
- 2008년 2월 1일 이전에 임시 교장 대행으로 임명된 교장들은, 만족할만한 연례 평가를 받고, 뉴욕주 교육부에서 정한 학교장 최소 자격요건을 충족할 경우 자동적으로 후보군에 포함된다. 섹션 VIII
- 거부권은 커뮤니티 교육장이 실시한 임명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련 구절이 첨부되었다. 섹션 XI(A)(1)(a)
- 커뮤니티 교육장 교장 및 교감 임명에 대한 거부는 선임 부교육감 또는 그 대리인이 교육감을 대신하여 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일관적이지 못한 표현을 정정하였다. 섹션 XI(A)(1)(a)
- 리더십 담당실(Office of Leadership) 또는 인사부에서는 후보들이 저마다의 전문성을 갖춘 영역에서 잡을 수 있는 특정 기회에 관하여 후보들에게 통보할 수 있다.

II. 제안된 규정 전문을 보실 수 있는 곳에 대한 정보.

본 규정 전문 및 수정조항 전문은 교육정책 패널 웹사이트 메인 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: http://schools.nyc.gov/AboutUs/leadership/PEP/publicnotice/2014-2015/May202015PEPRegulations

III. 현재 검토중인 사안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해당 조항에 대한 정보를 문의할 수 있는 뉴욕시 학군 담당자의 이름, 담당실, 주소, 이메일 및 전화번호.

성명: Laura Feijoo
소속부서: Supervising Superintendent
주소: 52 Chambers Street, Room 320, New York, NY 10007
이메일: RegulationC-30@schools.nyc.gov
전화: 212-346-5211

IV. 현재 검토중인 개정조항에 대해 위원회가 찬반투표를 실시할 교육정책 패널의 회의 일자, 시간 및 장소.

2015 년 5 월 20 일 6:00 p.m.
Prospect Heights Campus
883 Classon Ave.
Brooklyn, NY 11225